



#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

[시행 2018. 12. 12.] [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-96호, 2018. 12. 12. 일부개정]

## 【제정·개정이유】

### ◇ 개정 이유

가.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축산환경관리원\*을 추가하여 축산 및 양분현황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 제공하고자 함

나. 「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의 일몰기한이 '18.7.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

### ◇ 주요내용

가. 가축분뇨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가축분뇨실태조사 자료조사 대상기관에 축산환경관리원 추가(안 제7조)

나. 고시 부칙에 현행 '18.7.16일로 설정되어 있는 재검토기한을 '19.1.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신설(안 제12조)

## 【제정·개정문】

**제7조(자료조사 대상기관)**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「농업통계조사 규칙」제8조에 따른 조사기관, 가축분뇨법 제2조제9호 나목에 따른 농협조합의 장,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, 농촌진흥청장 또는 「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·평가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축산·양분현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보통비료 및 퇴비·액비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「비료관리법」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호에 따른 퇴비·액비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



경오염현황 등의 기존 자료를 검토하거나 환경오염현황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항목별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자료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1. 하천 및 호소: 「물환경보전법」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망 조사기관
2. 지하수: 「지하수법」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
3. 토양: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
4. 악취: 「악취방지법」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조사항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2조(재검토기한)** 농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